

(비공식 번역본)

## 투자촉진 정책 및 기준

(투자청 투자위원회 공고, No. 2/2557)

국내외 경제·투자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투자위원회는 투자촉진 정책 및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대응하고,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및 농업·공업·서비스업 부문의 개발 계획에 따른 국가 발전 방향에 부응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투자위원회는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 B.E. 2520)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투자촉진 정책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다음과 같은 공고는 폐기된다.

- 1.1. 투자촉진 정책 및 기준에 관한 공고(투자위원회, No. 1/2543, 2000. 8. 1)
- 1.2. 기능(Skill), 기술(Technology) 및 혁신(Innovation) 등 STI 개발 투자를 위한 추가적 권리 및 혜택에 관한 공고(투자위원회, No. 3/2549, 2006. 3. 20)
- 1.3.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지속적 장기 투자 프로젝트의 촉진 정책에 관한 공고(투자위원회, No. 5/2549, 2006. 3. 20)
- 1.4. 대규모 투자자본을 수반하고 전기·전자 산업에 특별히 중요한 지속적 장기 투자 프로젝트의 촉진 정책에 관한 공고(투자위원회, No. 8/2549, 2006. 6. 27)
- 1.5. 산업 부문과 교육기관 간 연구개발(R&D) 협력 촉진 조치에 관한 공고(투자위원회, No. 1/2550, 2007. 4. 9)
- 1.6. 기능, 기술 및 혁신 등 STI 투자에 대한 권리 및 혜택 부여에 관한 개정 공고(투자위원회, No. 6/2552, 2009. 5. 29)
- 1.7. 투자촉진 대상 활동의 유형, 규모 및 조건에 관한 공고(투자위원회, No. 10/2552, 2009. 10. 15)
- 1.8. 기능, 기술 및 혁신 등 STI 투자에 대한 추가적 권리 및 혜택 부여에 관한 공고(투자위원회, No. 11/2552, 2009.10. 15)

2. 투자위원회 또는 투자청의 여타 공고가 본 공고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공고가 우선한다.

### 3. 투자촉진 비전

투자위원회의 투자촉진 비전은 다음과 같다.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며 자족경제라는 철학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태국에 대한 투자와 태국의 해외투자 모두를 포함하여 가치 있는 투자를 촉진해 나간다.”

### 4. 투자촉진 정책

전술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투자촉진 정책을 정하였다.

- 4.1 연구개발, 혁신, 농업·공업·서비스업 부문의 가치창출, 중소기업, 공정경쟁 및 포용적 성장을 장려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촉진한다.
- 4.2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촉진한다.
- 4.3 지역별 발전 잠재력에 부합하는 투자에 집중하고 가치사슬을 강화하기 위한 클러스터를 촉진한다.
- 4.4 태국 남부의 접경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향상시키고 해당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한다.
- 4.5 인접국들과 경제적으로 연계하고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진입 준비를 위하여, 특히 접경지역에 위치한 특별경제개발구역(산업단지 내외부 포함) 조성을 촉진한다.
- 4.6 태국의 산업경쟁력과 세계경제에서 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태국의 해외투자를 촉진한다.

## 5. 투자촉진 대상 활동

- 5.1 본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목록상의 활동들은 투자촉진 대상에 해당한다.
- 5.2 투자촉진 대상 프로젝트의 각각의 활동에 대한 조건과 권리 및 혜택이 명시되어 있다.
- 5.3 아래에 열거된 활동은 특별히 중요하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활동으로서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법인소득세 면제 금액에 대한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활동범주 1.3 경제림(經濟林, economic forest) 조성(유칼립투스(Eucalyptus) 제외)
- 활동범주 3.9 창조적 제품 설계 및 개발센터
- 활동범주 4.11.1 항공기 기체, 부품 및 주요 장치(예: 엔진, 프로펠러, 항공전자기기 등) 제조
- 활동범주 5.6 일렉트로닉스 설계
- 활동범주 5.7 소프트웨어
- 활동범주 7.1.1.1 쓰레기 또는 폐기물가공연료(refuse-derived fuel)를 통한 전기 또는 증기 생산
- 활동범주 7.8 에너지 서비스 기업(ESCO)
- 활동범주 7.9.2 산업구역 또는 기술기반 산업구역
- 활동범주 7.10 클라우드 서비스
- 활동범주 7.11 연구개발(R&D)
- 활동범주 7.12 바이오 기술
- 활동범주 7.13 엔지니어링 설계
- 활동범주 7.14 과학 실험실
- 활동범주 7.15 보정(Calibration) 서비스
- 활동범주 7.19 직업훈련센터

## 6. 프로젝트 승인 기준

투자위원회는 프로젝트 승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6.1 농업·공업·서비스업 부문의 경쟁력 개발

- 6.1.1 프로젝트의 부가가치는 매출(revenues)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농업 및 농산물, 전자 제품 및 부품, 코일 센터(coil center) 부문은 프로젝트의 부가가치가 최소한 매출의 10%이어야 한다.
- 6.1.2 현대적 생산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6.1.3 신제품인 기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고 기계류를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제조연도로부터 수입연도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중고 기계류는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법인소득세 면제 금액에 대한 상한 계산시 투자자본으로 간주된다. 다만, 수입관세 면제 혜택은 부여되지 아니한다. 신뢰할 만한 기관이 발급한 성능 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 증명서에는 기계의 효율성, 환경적 영향, 에너지 사용량과 적정가격(fair value)이 명시되어야 한다.
- (2) 제조연도로부터 수입연도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고 기계류는 프레스 기계만이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법인소득세 면제 금액에 대한 상한 계산시 투자자본으로 간주된다. 다만, 수입관세 면제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 신뢰할 만한 기관이 발급한 성능 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 증명서에는 기계의 효율성, 환경적 영향, 에너지 사용량과 적정가격(fair value)이 명시되어야 한다.
- (3) 해상 및 항공 운송 활동과 금형 및 다이스의 경우, 제조연도로부터 수입연도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중고 기계류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법인소득세 면제 금액에 대한 상한 계산시 투자자본으로 간주되며, 수입관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투자청(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6.1.4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1,000만 바트 이상인 프로젝트는 전면적인 운영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ISO 9000 또는 ISO 14000 인증을 획득하거나 기타 유사한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이 1년 감소한다.

6.1.5 정부개발프로젝트(concession project) 및 국영기업 민영화 프로젝트의 경우, 위원회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1998년 5월 25일자 및 2004년 11월 30일자 내각 결정에 근거한다.

- (1) 1999년 국영기업민영화법(State Enterprise Corporatization Act)에 따른 국영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촉진 대상이 될 수 없다.
- (2)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OT(Build-Operate-Transfer)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소유한 국가기관은 입찰 안내 전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입찰자들은 그 프로젝트와 관련한 투자촉진 특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받아야 한다. 정부 개발프로젝트(concession project)를 위해 민간 부문에서 국가에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과 비교하여 민간 부문의 투자금액이 합당한 수준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투자촉진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 (3) 민간 부문에 임대되거나 민간 부문이 관리하고 국가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BOO(Build-Own-Operate) 프로젝트의 경우, 위원회는 일반적인 투자촉진 기준을 적용한다.
- (4) 1999년 국영기업민영화법에 따른 국영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민영화 이후 확장을 하는 경우, 그러한 확장을 위한 투자만이 투자촉진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센티브는 일반적인 투자촉진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 6.2 환경 보호

6.2.1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젝트는 환경의 질을 보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지침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위치 및 오염 처리방안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할 것이다.

6.2.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유형과 규모의 프로젝트 또는 활동은 환경 관련 법규 또는 내각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6.2.3 라영(Rayong)에 위치하는 프로젝트는 라영 지역의 산업촉진정책에 관한 공고(투자청, No. Por 1/2554, 2011. 5. 2)를 준수하여야 한다.

### 6.3 최소 투자자본 및 프로젝트 타당성

6.3.1 본 공고에 첨부된 투자촉진 대상 활동 목록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은 100만 바트이다.

지식기반 서비스의 경우, 최소 투자자본 요건은 본 공고에 첨부된 투자촉진 대상 활동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 연봉 지출액에 근거한다.

6.3.2 신규 프로젝트는 자본 대 부채의 비율이 1대 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달리 고려한다.

6.3.3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7억5,000만 바트 이상인 프로젝트는 위원회에서 규정한 세부사항이 수록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7. 외국인 주식 보유에 대한 기준

위원회는 투자촉진에 적용되는 프로젝트의 외국인 주식 보유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7.1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B.E 2542)의 "List On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등록자본의 5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태국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7.2 외국인사업법(B.E 2542)의 "List Two" 및 "List Thre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여타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제한은 없다.

7.3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 투자촉진 대상 활동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8. 투자촉진구역

위원회는 투자촉진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8.1 1인당 소득이 낮은 20개 주: 깔라싌(Kalasin), 차이야품(Chaiyaphum), 나컨파놈(Nakhon Phanom), 난(Nan), 붕간(Bueng Kan), 부리람(Buri Ram), 프래(Phrae), 마하사라캄(Maha Sarakham), 묵따한(Mukdahan), 매홍썸(Mae Hong Son), 야소턴(Yasothon), 로이엣(Roi Et), 씨사켓(Si Sa Ket), 싸콘나컨(Sakhon Nakhon), 싸깨우(Sa Kaew), 수코타이(Sukhothai), 수린(Surin), 녕부어람푸(Nong Bua Lamphu), 우본랏차타니(Ubon Ratchatani) 및 암낫짜른(Amnatcharoen)

8.2 특별경제개발구역

8.3 투자촉진을 받았거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과학기술파크

## 9. 인센티브(권리 및 혜택) 부여 기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유형의 인센티브를 규정한다.

### 9.1 활동 기반 인센티브

위원회는 활동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은 2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9.1.1 **A 그룹**은 법인소득세 인센티브, 기계류 및 원재료 수입관세 인센티브 및 기타 비조세 인센티브를 받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룹은 다음과 같이 4개의 하위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A1 그룹**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 8년간의 법인소득세 면제(면제 금액 상한 없음)
- 기계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수출용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필수재료에 대한 1년간의 수입관세 면제 (해당 기간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가능)
- 기타 비조세 인센티브

**A2 그룹**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 100%에 대한 8년간의 법인소득세 면제
- 기계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수출용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필수재료에 대한 1년간의 수입관세 면제. (해당 기간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가능)
- 기타 비조세 인센티브

**A3 그룹**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 100%에 대한 5년간의 법인소득세 면제. 다만, 해당 활동이 상한 적용 없는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고 투자촉진 대상 활동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기계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수출용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필수재료에 대한 1년간의 수입관세 면제. (해당 기간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가능)
- 기타 비조세 인센티브

**A4 그룹**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 100%에 대한 3년간의 법인소득세 면제
- 기계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수출용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필수재료에 대한 1년간의 수입관세 면제. (해당 기간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가능)
- 기타 비조세 인센티브

9.1.2 **B 그룹**은 기계류 및 원재료 수입관세 인센티브 및 기타 비조세 인센티브만 받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룹은 다음과 같이 2개의 하위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B1 그룹**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 기계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수출용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필수재료에 대한 1년간의 수입관세 면제. (해당 기간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가능)
- 기타 비조세 인센티브

**B2 그룹**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 수출용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필수재료에 대한 1년간의 수입관세 면제.

(해당 기간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가능)

- 기타 비조세 인센티브

## 9.2 **메리트(merit) 기반 인센티브 (프로젝트의 가치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권리 및 혜택)**

국가 또는 산업 전반에 이익이 되는 활동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의 확대를 유도 및 장려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의 메리트에 근거한 추가적 인센티브를 규정한다.

### 9.2.1 **경쟁력 향상 메리트**

프로젝트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투자 또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 (1) 기술 및 혁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내부 R&D, 태국 내 아웃소싱 R&D, 해외 기관과의 공동 R&D 등 포함)
- (2)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기술·인적자원 개발펀드, 교육기관, 전문교육훈련센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태국 정부기관 등에 대한 기부**
- (3) **태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지적재산권(IP) 취득/라이선스 비용**
- (4) **첨단 기술 교육훈련**
- (5) 첨단기술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분야에서 태국인이 등록자본의 최소 51%의 지분을 보유한 **현지 공급업체의 개발**
- (6) **제품 및 포장 설계** :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내부적으로 또는 태국 내 아웃소싱을 통해 하는 경우

세부 사항은 투자청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추가적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 (1) 적격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프로젝트 최초 3년간 총수입의 1% 이상이거나 2억 바트 이상인 경우(둘 중 낮은 금액 적용), 1년이 추가된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 적격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프로젝트 최초 3년간 총수입의 2% 이상이거나 4억 바트 이상인 경우(둘 중 낮은 금액 적용), 2년이 추가된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적격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프로젝트 최초 3년간 총수입의 3% 이상이거나 6억 바트 이상인 경우(둘 중 낮은 금액 적용), 3년이 추가된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적 법인소득세 면제 금액에 대한 상한은 9.2.1(1)항에 명시되어 있는 투자액과 지출액의 200% 및 9.2.1(2)~(6)항에 명시되어 있는 투자액과 지출액의 100%에 해당한다.

### 9.2.2 **지방균형발전 메리트**

8.1항에 명시된 투자촉진구역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는 다음의 추가적 인센티브를 받는다.

- (1) 3년이 추가된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 단,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A1 그룹** 또는 **A2 그룹**의 활동에 속하는 프로젝트는 8년간의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므로,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 만료 후 5년간에 걸쳐 투자촉진 활동으로 거둔 순이익(net profit)에 대한 법인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 (2) 투자촉진 활동으로 최초 수입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수송, 전기 및 물 사용 비용에

대한 이중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 (3) 프로젝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또는 건설 비용의 25%가 통상적인 감가상각비와 더불어 순이익에서 공제된다. 그러한 공제는 투자촉진 활동으로 최초 수입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년 또는 수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적용할 수 있다.

### 9.2.3 산업지역 개발 메리트

산업단지 또는 투자촉진을 받은 산업구역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1년이 추가된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인센티브는 프로젝트가 산업단지 또는 투자촉진을 받은 산업구역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활동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 9.2.4 메리트 기반 인센티브 신청 자격이 있는 프로젝트

- (1) **A 그룹**의 활동에 속하는 프로젝트는 투자촉진 신청 시 또는 투자촉진 대상으로 지정 이후 메리트 기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촉진 대상으로 지정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투자촉진 대상으로 지정된 프로젝트는 수입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메리트 기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메리트 기반 인센티브 신청일 현재 해당 프로젝트는 투자촉진법 제31조에 따른 법인소득세 면제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는 기간과 금액 측면에서 잔여분이 있어야 한다.

- (2) **B 그룹**의 활동에 속하는 프로젝트는 9.2.1항 **경쟁력 향상 메리트** 및 9.2.2항 **지방균형 발전 메리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투자촉진 신청 시에만 신청할 수 있다. 투자촉진 대상 활동 목록에 메리트 기반 인센티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활동은 그러한 신청을 할 수 없다.

## 10. 생산효율성 제고 인센티브

생산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는 프로젝트가 투자촉진을 받는 동안에는 다음의 기계류에 대해서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10.1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기계류

10.2 오염의 방지 또는 처리에 사용되는 기계류

10.3 프로젝트의 전면적인 운영 개시 여부를 불문하고, 기존 기계류의 개선이나 대체 또는 기존 프로젝트의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 제품 및 부품을 제조하고자 투자촉진 대상으로 인정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기계류

## 11. 법인소득세 인센티브의 사용

투자촉진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부여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며, 투자촉진에 대한 명확한 비용-편익 평가를 위하여, 투자촉진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당해 연도에 대한 법인소득세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전에 프로젝트에 대한 운영 결과를 투자청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고 기준 및 방법은 투자청이 정한 바에 따른다.

## 12. 임시 조항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지속적 장기 투자 프로젝트의 촉진 정책에 관한 공고(투자위원회, No. 5/2549, 2006. 3. 20) 또는 대규모 투자자본을 수반하고 전기·전자 산업에 특별히 중요한 지속적 장기 투자 프로젝트의 촉진 정책에 관한 공고(투자위원회, No. 8/2549, 2006. 6. 27)에 따른 투자촉진 대상자가 본 공고의 발효일 이후 투자촉진 혜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공고들 중 해당하는 공고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13. 본 공고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제출되는 신청서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공고일: 2014년 \_\_월 \_\_일

(General Prayut Chan-o-cha)

투자위원회 의장

본 비공식 번역본은 정보 제공용입니다. 법적인 용도를 위해서는 태국어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태국어 원본이 본 번역본에 우선합니다.



## 투자촉진 대상 활동 목록

### Section 1: 농업 및 농산물

활동	조건	인센티브
1.1 생물 비료, 유기 비료, 나노코팅 유기화학 비료 및 바이오 살충제의 제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생물 비료, 유기 비료 및 나노코팅 유기화학 비료는 등록되어야 하고 상업용 비료 제조를 위한 면허를 농업협동조합부 농업국(Department of Agriculture)으로부터 취득해야 한다.</li><li>2. 바이오 살충제는 등록되어야 하고 생산을 위한 면허를 농업협동조합부 농업국으로부터 취득해야 한다.</li><li>3. 프로젝트는 학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접종물 및 혁신기술을 사용해야 한다.</li></ol>	A3
1.2 식물 또는 동물 육종(바이오기술에 속하지 않는 활동만 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프로젝트는 R&amp;D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li><li>2. 농업협동조합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정책에 따라 민감한 식물을 육종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등록자본의 5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태국인이 보유해야 한다.</li><li>3. 프로젝트를 통한 식물 육종 후 식물 번식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투자촉진 대상 프로젝트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다만, 카사바(cassava)의 번식의 경우는 제외한다.</li></ol>	A3
1.3 경제림 조성(유칼립투스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전체 조림 면적은 300 rai 이상 이어야 하며 그 중 최소 50 rai는 인접해 있어야 한다.</li><li>2. 프로젝트는 R&amp;D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li><li>3. 프로젝트는 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li></ol>	A1
1.4 농작물 건조 및 사일로(silo) 시설		B1
1.5 동물 번식 또는 축산업 1.5.1 가축 및 수생동물 번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프로젝트는 최신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예) 폐쇄형 하우스 시스템, 증발식 냉각시스템, 자동 급수 및 사료공급 시스템, 벡터 제어계측 시스템, 동물의 추적 및 계수를 위한 센서 시스템</li></ol>	A4

1.5.2 축산업 또는 양식업(새우 제외)	<p>2. 프로젝트는 이력추적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p> <p>3. 사육 공정이 없는 산란은 투자촉진 대상이 아니다.</p> <p>1. 프로젝트는 번식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p> <p>2. 프로젝트는 최신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예) 폐쇄형 하우스 시스템, 증발식 냉각 시스템, 자동 급수 및 사료공급 시스템, 벡터 제어 계측 시스템, 동물의 추적 및 계수를 위한 센서 시스템, 효과적인 환경보호 및 환경 영향 감소 시스템</p> <p>3. 프로젝트는 이력추적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p>	A4
1.6 도축업	<p>1. 프로젝트는 최신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예) 기절 방법(stunning method), 샤클(shackle), 냉장저장, 냉각 시스템, 식육 품질 및 오염물 검사 등</p> <p>2. 프로젝트는 이력추적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p>	A4
1.7 심해어업	<p>1. 두릿그물어선(surrounding net boat)의 총톤수는 최소 500톤이어야 한다.</p> <p>2. 주낙어선(long line boat)의 총톤수는 최소 150톤이어야 한다.</p> <p>3. 어선은 항행 장비, 어군탐지기 및 추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p>	A3
1.8 식물, 채소, 과일 또는 화훼의 등급분류, 포장 및 저장	<p>1.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예) 과일 숙성 센서, 고주파 해충 퇴치 시스템, 핵자기공명 시스템</p> <p>2. 프로젝트는 최신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예) 색깔 분류기, 과일에 생기는 파리 알을 방제하기 위한 증기 열처리 시스템, 종자 코팅</p> <p>3. 쌀의 등급분류 시에는 첨단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p>	A2 A3
1.9 특별한 성질을 지닌 식물을 원료로 한 변형전분 또는 전분의 제조		A3
1.10 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의 제조(콩기름 제외)	<p>1. 식물성 원유 또는 반정제유의 제조는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p> <p>2. 식물성 정제유는 농산물 또는 원유를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p>	A3
1.11 천연추출물 또는 천연추출물 제품의 제조 (의약품, 비누, 샴푸, 치약 및 화장품 제외)		A4

1.12 천연원료를 사용한 유효성분의 제조	프로젝트는 작용 및 독성에 관한 학술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A2
1.13 제혁 또는 가죽 마감처리	1. 프로젝트는 환경친화적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예) 화학물질 사용 감소, 화학물질 대신 효소나 생물촉매 사용 2. 제혁 시설은 산업단지 또는 투자촉진 대상 산업구역에 위치해야 한다.	A3
1.14 천연 고무 제품의 제조(고무밴드, 고무풍선 및 고무링 제외) 1.14.1 1차 가공 고무의 제조 1.14.2 고무제품의 제조		A4 A2
1.15 농업 부산물 또는 농업 폐기물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건조 및 탈수와 같이 단순한 생산공정은 제외)		A4
1.16 농업 찌꺼기,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포함하여 농산물을 사용한 연료의 제조 1.16.1 농산물을 사용한 연료의 제조 1.16.2 농업 찌꺼기,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사용한 연료의 제조. 예)바이오액화연료(BTL), 폐수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가스 1.16.3 바이오매스 бри켓 및 펠릿 제조		A2 A2 A3
1.17 최신 기술을 사용한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 원료의 제조 또는 보존(식수, 아이스크림, 사탕, 초콜릿, 껌, 설탕, 탄산음료, 알코올 음료, 카페인 음료, 밀가루, 식물성 전분, 제빵류, 즉석 면, 치킨 에센스 및 예비집 제외)	1. 혼합 또는 희석 공정만 갖춘 프로젝트는 투자촉진 대상이 아니다. 2. 발효 공정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연구조사에 의해 뒷받침되는 접종균(starter culture)을 사용해야 한다.	A3
1.18 의료용 식품 및 보조식품의 제조	1. <u>의료용 식품 제조의 경우</u> , 제품은 태국 식품의약청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보유한 기타 기관에 "의료용 식품"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2. <u>보조식품 제조의 경우</u> , 2.1 제품은 태국 식품의약청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보유한 기타 기관에 "보조 식품"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2.2 프로젝트는 유효성분 추출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A2
1.19 냉장저장, 또는 냉장저장 및 냉장운송		B1

1.20 농산물 거래 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 면적은 50 rai 이상이어야 한다.</li> <li>2. 농산물 관련 운영 및 서비스 구역의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 전시회 또는 거래를 위한 공간, 경매 센터, 냉장 저장소 및 사일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li> <li>3. 농산물에 대한 검사, 등급분류 및 살충제 잔류물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li> </ol>	A3
----------------	--	----

참고 : 1 rai는 약 1,618m<sup>2</sup>(489.6평) 정도임.

## Section 2: 광물, 세라믹 및 기초금속

활동	조건	인센티브
2.1 광물 탐사	1. 투자촉진 혜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광물 탐사 면허(PA: Prospecting Atchayabat 또는 EPA: Exclusive Prospecting Atchayabat 또는 SA: Special Atchayabat)를 취득해야 한다. 2. 메리트 기반 인센티브 대상이 아니다.	B1
2.2 탄산칼륨 채광 및/또는 가공	투자촉진 혜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광 면허(Prathanabat) 또는 채광 서브리스(sublease)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B1
2.3 첨단소재나 나노소재의 제조이거나 첨단소재 또는 나노소재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	프로젝트는 국가과학기술개발청(NSTA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2
2.3.1 첨단소재 또는 나노소재의 제조이거나 동일 프로젝트에서 첨단소재나 나노소재로부터 연속된 제조공정에 의한 첨단소재 또는 나노소재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		A3
2.3.2 첨단소재 또는 나노소재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		A3
2.4 유리 또는 세라믹 제품의 제조		
2.4.1 특수유리 제품의 제조	프로젝트는 용융 및/또는 어닐링(annealing)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A3
2.4.2 유리 제품의 제조	프로젝트는 어닐링(annealing)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B1
2.4.3 세라믹 제품의 제조 (도기 및 세라믹 타일 제외)	프로젝트는 소성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B1
2.5 내화성 소재 또는 열 절연재의 제조 (발포성 경량벽돌 제외)	메리트 기반 인센티브 대상이 아니다.	B2
2.6 석고보드 또는 석고 제품의 제조	메리트 기반 인센티브 대상이 아니다.	B2
2.7 업스트림 단계의 강철 제조 예) 용선(hot metal), 선철, 해면철(Sponge Iron), 직접환원철(DRI), 고온 브리켓 철(HBI)		A2
2.8 중간산물 강철의 제조. 예) 슬래브, 빌릿, 대강편(bloom)	1. 중간산물 강철이 동일 프로젝트에서 업스트림 단계의 강철 제조공정과 연속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경우 2. 중간산물의 강철만 생산하는 경우	A2  A4
2.9 다운스트림 단계의 강철 제조		

2.9.1 고장력강의 제조	제품의 인장강도(UTS)는 700 MPa를 초과해야 한다.	A2
2.9.2 동일 프로젝트에서 업스트림 단계의 강철 및 중간산물 단계의 강철 제조 공정을 포함하고 이와 연속된 공정을 통한 다운스트림 단계의 강철 제조		A2
2.9.3 산업용 장척강(long steel)의 제조. 예) 강철 선재, 철사, 샤프트, 강봉		A4
2.9.4 건설용 장척강의 제조. 예) 강철 선재, 철사, 샤프트, 강봉		B1
2.9.5 산업용 평판압연강 제품의 제조. 예)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강판,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 강판, 도장강판		A4
2.9.6 건설용 평판압연강 제품의 제조. 예)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강판,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 강판, 도장강판		B1
2.9.7 주석도금 흑피강판(Tin Mill Black Plate)의 제조		A3
2.9.8 냉간압연 전기강판의 제조		NO(Non-Oriented) 및 GO(Grain-Oriented)만 적용된다.
2.10 강관 또는 스테인리스 강관의 제조		A3
2.10.1 심리스(Seamless) 강관 및 세미심리스 강관		B1
2.10.2 기타 강관		B1
2.11 금속분말의 제조(샷블라스팅 제외)		A3
2.12 합금철의 제조		A4
2.13 주철/주강 부품의 제조	프로젝트는 생산공정에서 유도로(induction furnace)를 사용해야 한다.	A2
2.13.1 연성 주강 부품		A3
2.13.2 기타 주강 부품		A3
2.14 단조철/단조강 부품의 제조		A3
2.15 비철금속의 압연, 인발(drawing), 주조 또는 단조		A4
2.16 코일 센터	메리트 기반 인센티브 대상이 아니다.	B2

### Section 3: 경공업

활동	조건	인센티브
3.1 섬유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		
3.1.1 천연섬유 또는 합성섬유의 제조		
3.1.1.1 기술섬유(technical fiber) 또는 기능성 섬유의 제조	프로젝트는 태국섬유협회(Thailand Textile Institute) 및 국가혁신청(National Innovation Agency)과 같은 유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2
3.1.1.2 재생섬유의 제조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또는 폐기물만을 사용해야 한다.	A4
3.1.1.3 기타 섬유의 제조		B1
3.1.2 실 또는 직물의 제조		
3.1.2.1 기능성 실 또는 기능성 직물의 제조	프로젝트는 태국섬유협회 및 국가혁신청과 같은 유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3
3.1.2.2 기타 실 또는 직물의 제조	1. 연구, 설계 또는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최초 3년간 총수입의 0.5% 이상인 프로젝트 2. 연구, 설계 또는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없거나, 연구, 설계 또는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최초 3년간 총수입의 0.5% 미만인 프로젝트	A4 B1
3.1.3 표백, 염색 및 마감처리, 또는 날염 및 마감처리, 또는 날염	1. 프로젝트는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공고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보호/관리 시스템을 갖춘 산업단지 또는 투자촉진 대상 산업구역에 위치하거나 그러한 지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2. 환경친화적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A3
3.1.4 의류, 의류용 액세서리 및 가정용 섬유	1. 연구, 설계 또는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최초 3년간 총수입의 0.5% 이상인 프로젝트 2. 연구, 설계 또는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액	A4 B1

	또는 지출액이 없거나, 연구, 설계 또는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최초 3년간 총수입의 0.5% 미만인 프로젝트	
3.2 부직포 또는 부직포로 제조한 위생 제품		A4
3.3 가방, 신발, 가죽 제품 또는 인조가죽 제품의 제조	1. 연구, 설계 또는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최초 3년간 총수입의 0.5% 이상인 프로젝트 2. 연구, 설계 또는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없거나, 연구, 설계 또는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최초 3년간 총수입의 0.5% 미만인 프로젝트	A4 B1
3.4 스포츠 장비 또는 부품의 제조		B1
3.5 악기의 제조		B1
3.6 가구 또는 부품의 제조	1. 연구, 설계 또는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최초 3년간 총수입의 0.5% 이상인 프로젝트 2. 연구, 설계 또는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없거나, 연구, 설계 또는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최초 3년간 총수입의 0.5% 미만인 프로젝트	A4 B1
3.7 완구의 제조	1. 연구, 설계 또는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최초 3년간 총수입의 0.5% 이상인 프로젝트 2. 연구, 설계 또는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없거나, 연구, 설계 또는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최초 3년간 총수입의 0.5% 미만인 프로젝트	A4 B1
3.8 원재료 및 프로토타입을 포함한 보석 및 장신구 또는 부품의 제조		A4
3.9 창조적 제품 설계 및 개발 센터	1.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1.1 설계를 위한 정보 시스템 1.2 컨셉 설계 및 창작 시스템 2. 프로젝트는 다음 중 하나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2.1 엔지니어링 설계 시스템 2.2 프로토타입 설계 및 성능 테스트 시스템 2.3 프로토타입 표준 시험 및 사용자 수용성 테스트 시스템	A1



	<p>3. 프로젝트의 전체 피고용인 중 최소 70%는 태국인이어야 한다.</p> <p>4. 창조적 제품 설계 및 개발에 종사하는 직원의 연봉으로 최소 150만 바트가 지출되어야 한다.</p>	
<p>3.10 렌즈의 제조</p> <p>3.10.1 비의료기기용 렌즈, 선글라스 렌즈 또는 미용 렌즈의 제조 예) 카메라 렌즈</p> <p>3.10.2 선글라스 렌즈, 미용 렌즈, 안경테 및 부품의 제조</p>		<p>A4</p> <p>B1</p>
<p>3.11 의료기기 또는 부품의 제조</p> <p>3.11.1 고위험성 또는 첨단기술 의료기기 (예: 엑스레이, MRI, CT 스캔 기계, 임플란트)이거나 공공부문 연구 또는 공공-민간 공동 연구를 통해 상용화된 의료기기의 제조</p> <p>3.11.2 기타 의료기기의 제조(직물 또는 섬유로 제작된 의료기기 제외)</p> <p>3.11.3 직물 또는 섬유로 제작된 의료기기. 예) 가운, 멸균포(drapes), 캡, 마스크, 거즈, 탈지면</p>	<p>거즈 또는 탈지면의 제조는 원면 직물 또는 면실을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p>	<p>A2</p> <p>A3</p> <p>A4</p>

### Section 4: 금속 제품, 기계류 및 운송장비

활동	조건	인센티브
4.1 금속 제품의 제조		
4.1.1 금속분말 또는 합금분말로 만든 제품	프로젝트는 소결(sintering)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A3
4.1.2 금속 제품 또는 금속 부품	동일 프로젝트에서 철/강철 주조공정(유도로 사용) 또는 단조공정에 연속하는 금속 성형 공정 (예: 머시닝과 스탬핑 등)을 갖추어야 한다.	A3
4.1.3 기타 금속 제품(기타 금속부품 포함)	1. 동일 프로젝트에서 비철금속의 프레스링, 인상(pulling), 주조, 또는 단조 공정과 연속하는 성형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2. 성형 공정 예)머시닝 및 스탬핑	A4 B1
4.2 표면처리 또는 양극산화(anodized) 표면 처리(장식용 코팅 또는 컬러링 처리 제외)	양극산화 표면처리의 경우, 프로젝트는 양극산화, 에칭, 인그레이빙(engraving) 등의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B1
4.3 열처리	시안화물은 열처리 공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	A4
4.4 다목적 엔진 및 장비의 제조	1. 프로젝트는 주요 엔진 부품(예: 실린더 헤드, 크랭크 케이스, 크랭크샤프트, 캠샤프트, 커넥팅 로드, 피스톤, 플라이휠 등)의 성형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2. 다목적 엔진 또는 장치의 조립	A4 B1
4.5 기계류, 장비 및 부품의 제조		
4.5.1 엔지니어링 설계를 통한 자동화 기계류 및/또는 자동화 장비	프로젝트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어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A2
4.5.2 기계류, 장비 및 부품 및/또는 주형 및 다이의 수리	프로젝트는 부품 성형 공정 및/또는 엔지니어링 설계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A3
4.5.3 기계류 및 기계 장비의 조립	프로젝트는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른 조립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A4
4.6 일반 자동차의 제조	메리트 기반 인센티브 대상이 아니다.	B1
4.7 자동차 엔진의 제조	1. 프로젝트는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크랭크샤프트, 캠샤프트, 커넥팅 로드 등 5개 부품 중에서 4개 이상의 부품 성형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A3

	2. 엔진 조립	A4
4.8 자동차 부품의 제조		
4.8.1 첨단 기술이 사용된 아래와 같은 자동차 부품 제조		A2
4.8.1.1 촉매전환장치 담체(Substrate)		
4.8.1.2 전자식 연료주입 시스템		
4.8.1.3 자동차 변속기		
4.8.1.4 전자제어장치(ECU)		
4.8.2 자동차 안전 부품 및 에너지 절감 부품의 제조		A2
4.8.2.1 ABS(Anti-Lock Brake System) 또는 EBD(Electronic Brake Force Distribution)		
4.8.2.2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4.8.2.3 회생제동 시스템		
4.8.2.4 아이들링 스톱 시스템		
4.8.2.5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4.8.3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HEV)용 부품의 제조		A2
4.8.3.1 배터리		
4.8.3.2 트랙션 모터		
4.8.3.3 공조 시스템		
4.8.4 자동차용 고무 타이어의 제조		A2
4.8.5 기타 자동차 부품의 제조		B1
4.9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	프로젝트는 운영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ISO 14000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A2
4.9.1 총톤수가 500톤 이상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		A2
4.9.2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엔진 및 장비가 설치된 강철 선박 또는 유리섬유 선박만 해당)		A2
4.10 열차, 전동열차, 장비 또는 부품의 제조 (철도 시스템만 해당)		A2
4.11 항공기 부품 및 장비 또는 탑재 장비를 포함한 항공기의 제조 또는 수리		
4.11.1 기체, 기체 부품 및 주요 장치.		A1

예) 엔진, 항공기 부품, 프로펠러, 전자기기 4.11.2 기타 항공기 부품 및 탑재 장치 및 장비(일회용 및 재사용 가능 용품 제외) 4.11.3 항공기, 부품 및 장비의 수리		A3  A2
4.12 오토바이의 제조(배기량 248 cc 미만 제외)	1. 프로젝트는 엔진 부품(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크랭크샤프트, 크랭크케이스, 캠샤프트 및 커넥팅 로드)의 성형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1.1 배기량 248 cc 이상 500 cc 미만 오토바이 제조의 경우, 프로젝트는 전술한 6개 부품 중에서 4개 이상의 부품 성형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1.2 배기량 500 cc 이상인 오토바이 제조의 경우, 프로젝트는 전술한 6개 부품 중 2개 부품의 성형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2. 프로젝트는 구조적 용접 공정 및 스프레이 페인팅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3. 부품의 제조 및 이용을 위한 투자계획서를 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3 (1~3항의 조건을 따라야 함)  B1 (2~ 3항의 조건을 따라야 함)
4.13 연료전지의 제조		A2
4.14 석유산업용 조립산업 또는 플랫폼 수리 4.14.1 엔지니어링 설계를 통한 조립산업 또는 플랫폼 수리 4.14.2 석유산업용 조립산업 또는 플랫폼 수리		A3  A4
4.15 과학 장비의 제조 4.15.1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과학 장비 4.15.2 기타 과학 장비	과학 장비는 매개변수 값 측정, 데이터 처리 및 결과의 자기보고(self-report)가 가능하거나 매개변수의 자동적 측정 및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A2 A3

## Section 5: 전자 및 전기 제품 산업

활동	조건	인센티브
5.1 전기 제품의 제조 5.1.1 첨단 전기 제품의 제조  5.1.2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및 건조기의 제조  5.1.3 기타 전기 제품의 제조	첨단 전기 제품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사물 인터넷).  제품은 태국 에너지효율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에너지부가 발급한 에너지 고효율 라벨(Label No. 5)을 보유하거나 공인 기관의 유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3  A4  B1
5.2 전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및/또는 장비의 제조 5.2.1 파워 인버터의 제조 5.2.1.1 산업용 파워 인버터의 제조 5.2.1.2 기타 파워 인버터의 제조  5.2.2 LED 램프의 제조  5.2.3 전기 제품용 컴프레서 및/또는 모터의 제조  5.2.4 와이어 하니스(wire harness)의 제조  5.2.5 기타 전기 제품용 부품 및/또는 장비의 제조	제품 설계가 제조 공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컴프레서는 에어컨, 냉동고 및 냉장고용으로서 태국 에너지효율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에너지부가 발급한 에너지 고효율 라벨 (Label No. 5)을 보유하거나 공인 기관의 기타 유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모터 생산의 경우, 제품 설계가 제조 공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A3 A4  A4  A4  B1  B1
5.3 전자 제품의 제조 5.3.1 유기인쇄전자(OPE) 제품의 제조  5.3.2 통신 제품의 제조 5.3.2.1 광섬유통신 및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발신, 전송 및 수신 장치의 제조 5.3.2.2 기타 통신 제품의 제조		A2  A2  A3

5.3.3 산업용/농업용 전자 제어 및 측정 기기의 제조		A2
5.3.4 보안 제어 장비의 제조		A2
5.3.5 시청각 제품의 제조		A4
5.3.6 사무용 전자 제품의 제조		A4
5.3.7 기타 전자 제품의 제조		B1
5.4 전자제품용 부품 및/또는 장비의 제조		
5.4.1 유기인쇄전자(OPE) 제품용 부품의 제조		A2
5.4.2 태양전지 및/또는 태양전지용 원재료의 제조	태양전지의 제조 공정 및 에너지 수율(energy yield)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2
5.4.3 통신 제품용 부품의 제조		
5.4.3.1 광섬유통신 및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발신, 전송 및 수신 장치용 부품의 제조		A2
5.4.3.2 기타 통신 제품용 부품의 제조		A3
5.4.4 산업용/농업용, 의료/연구기기 및 자동차 산업용 전자 제어 및 측정 기기 부품의 제조		A2
5.4.5 보안 제어 장비용 부품의 제조		A2
5.4.6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및/또는 HDD 부품의 제조		
5.4.6.1 첨단 HDD 및/또는 부품의 제조 (탑 커버, 베이스 플레이트 및 주변장치 제외)	1. HDD의 면기록밀도(areal density)는 평방 인치당 2,000기가비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기존 기계의 리퍼비시 비용은 투자로 간주되어 법인소득세 면제 금액 상한 계산시 산입된다. 기존 기계의 최초 취득가액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A2
5.4.6.2 HDD 및/또는 부품의 제조(탑 커버, 베이스 플레이트 및 주변장치 제외)	기존 기계의 리퍼비시 비용은 투자로 간주되어 법인소득세 면제 금액 상한 계산시 산입된다.	A3

5.4.6.3 HDD용 탑 커버,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주변장치의 제조	기존 기계의 최초 취득가액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A4
5.4.7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및/또는 SSD 부품의 제조	기존 기계의 리퍼비시 비용은 투자로 간주되어 법인소득세 면제 금액 상한 계산시 산입된다. 기존 기계의 최초 취득가액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A2
5.4.8 태양 에너지 구동 제품용 부품 및/또는 장비의 제조		A3
5.4.9 반도체 및/또는 반도체 부품의 제조	집적회로(IC) 생산의 경우, 기존 기계의 리퍼비시 비용은 투자로 간주되어 법인소득세 면제 금액 상한 계산시 산입된다. 기존 기계의 최초 취득가액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A3
5.4.10 광자 장치용 및/또는 광자 통합 시스템용 장비 및/또는 부품의 제조		A3
5.4.11 평판 디스플레이의 제조	제조 공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3
5.4.12 유연 인쇄회로기판 및/또는 다층 인쇄회로기판 및/또는 부품의 제조	제조 공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3
5.4.13 기타 메모리 저장 장치의 제조		A4
5.4.14 인쇄회로기판 어셈블리(PCBA)의 제조		A4
5.4.15 전자기 제품(electro-magnetic product)의 제조		A4
5.4.16 수동소자(Passive components)의 제조		A4
5.4.17 시청각 제품용 부품의 제조		A4
5.4.18 사무용 전자제품 부품의 제조		A4
5.4.19 기타 전자제품용 부품의 제조		B1
5.5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용 소재의 제조	1. 제조 공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5.5.1 웨이퍼의 제조</p> <p>5.5.2 박막필름 기술 기반 소재의 제조</p>	<p>2. 기존 기계의 리퍼비시 비용은 투자로 간주되어 법인소득세 면제 금액 상한 계산시 산입된다. 기존 기계의 최초 취득가액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p>	<p>A2</p> <p>A3</p>
<p>5.6 일렉트로닉스 설계</p> <p>5.6.1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설계</p> <p>5.6.2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p>	<p>1. 프로젝트는 일렉트로닉스 설계 직원의 연봉으로 최소 150만 바트를 지출해야 한다.</p> <p>2. 투자촉진을 받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의해 발생한 수입 또는 투자촉진을 받은 기업 또는 하도급업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수행한 다운스트림 생산에 의해 발생한 수입은 해당 투자촉진 사업의 수입으로 간주된다.</p> <p>3. 투자촉진을 받았거나 위원회에서 인정한 과학기술파크에 위치하는 경우, 정규 법인 소득세 면제 기간 만료 후 5년간 법인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p>	<p>A1</p> <p>A1</p>
<p>5.7 소프트웨어</p> <p>5.7.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p> <p>5.7.2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및/또는 디지털 콘텐츠</p> <p>디지털 콘텐츠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니메이션, 만화 및 캐릭터</li> <li>- CGI(Computer Generated Image)</li> <li>-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컴퓨팅</li> <li>- 쌍방향 애플리케이션</li> <li>- 게임: 윈도 기반, 모바일 플랫폼, 콘솔, PDA, 온라인 게임, 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게임(MMOG) 등</li> <li>- 무선 위치 기반 서비스 콘텐츠</li> <li>- 시각효과</li> <li>-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li> <li>- 광대역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를 통한 e-러닝 콘텐츠</li> </ul>	<p>1. 프로젝트는 IT 직원의 연봉으로 최소 150만 바트를 지출해야 한다.</p> <p>2.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청(SIPA)이 규정한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p> <p>3.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1,000만 바트 이상인 프로젝트는 전면적인 운영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SIPA로부터 품질 표준 인증을 획득하거나 CMMI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품질 표준 인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그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의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취소된다.</p> <p>4. 투자촉진을 받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의해 발생한 수입은 해당 투자촉진 사업의 수입으로 간주된다.</p>	<p>A1</p> <p>A3</p> <p>(법인소득세 면제 금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p>
<p>5.8 전자상거래</p>	<p>메리트 기반 인센티브 대상이 아니다.</p>	<p>B2</p>



## Section 6: 화학물질, 종이 및 플라스틱

활동	조건	인센티브
6.1 산업용 화학물질의 제조	페인트, 세척 제품, 자동차 윤활유, 복합 화학 비료, 살충제, 제초제, 시멘트 기반 접착제 등과 같은 소비자 제품에 해당하는 화학 제품은 투자촉진 대상이 아니다.	A4
6.2 친환경 화학물질 또는 폴리머의 제조 또는 친환경 폴리머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6.2.1 친환경 화학물질 또는 폴리머의 제조, 또는 친환경 화학물질 또는 폴리머의 제조와 동일한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친환경 화학물질 또는 폴리머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1. 화학물질 또는 폴리머는 생애주기평가(LCA)를 통해 환경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밝혀져야 한다. 이들 제품은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지속가능한 녹색화학(Green Chemistry)을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증 또는 입증 될 수 있거나, 생분해성이고 독성물질을 생성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전면적인 운영 개시일 전에 LCA와 같은 국제 공인 표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A2
6.2.2 친환경 폴리머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친환경 플라스틱 또는 폴리머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성형 또는 코팅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A3
6.3 정유		B1
6.4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A3
6.5 특수 폴리머 또는 특수 화학물질의 제조		A2
6.6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플라스틱 성형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B1
6.7 특수 플라스틱 포장의 제조 6.7.1 다층 플라스틱 포장	3겹을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3
6.7.2 무균 플라스틱 포장	전면적인 운영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ISO 14611 레벨 7(청정실) 또는 미국 연방규격 209 E 클래스 10000이상 인증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A3
6.7.3 정전기방지 플라스틱 포장	전면적인 운영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ISO 14611 레벨 7(청정실) 또는 미국 연방규격 209 E 클래스 10000이상 인증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국제표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A3
6.8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의	태국 국내 플라스틱 원재료만을 사용하는 성형	A4

제조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6.9 원료의약품(API)	API의 유효성분 또는 원재료 생산용이어야 한다.	A2
6.10 의약품의 제조	1. 현대의학 의약품 제조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촉진 프로젝트는 전면적인 운영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가 규정한 GMP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2. 전통의학 의약품 제조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촉진 프로젝트는 전면적인 운영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GMP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3. 기존 프로젝트를 개선하는 경우, 기존 기계류는 투자촉진을 받은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그 가치는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위한 투자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B1
6.11 기초 화학비료의 제조		A2
6.12 펄프 또는 종이의 제조		
6.12.1 위생용 펄프 또는 위생용 종이	전면적인 운영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ISO 14611 레벨 5(청정실) 또는 미국 연방표준 209 E 클래스 100 이상 인증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A2
6.12.2 특수 펄프 또는 특수 종이	전면적인 운영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GMP 또는 Food Grade와 같은 관련 제품 표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A3
6.13 종이 물품의 제조		
6.13.1 위생용 종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위생적인 생산공정을 갖추어야 하며, 전면적인 운영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GMP 또는 Food Grade와 같은 관련 표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A4
6.13.2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 용기의 제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 코팅 공정이 생산공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A4
6.13.3 고성능 종이 제품의 제조	하중지지력 또는 충격흡수력 등과 같은 엔지니어링 설계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A4
6.14 인쇄물의 제조		
6.14.1 디지털 인쇄물의 제조	프로젝트는 디지털 미디어 소프트웨어(Digital Media Software)를 사용하는 인쇄 및 디자인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A3
6.14.2 인쇄물의 제조		B1

## Section 7: 서비스 및 공공 유틸리티

활동	조건	인센티브
<p>7.1 공공 유틸리티 및 기초 서비스</p> <p>7.1.1 전기의 생산 또는 전기 및 증기의 생산</p> <p>7.1.1.1 쓰레기 또는 폐기물 가공 연료 (Refuse Derived fuel)를 통한 전기 생산 또는 전기 및 증기 생산</p> <p>7.1.1.2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 또는 전기 및 증기 생산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사용한 연료 제외)</p> <p>7.1.1.3 기타 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 또는 전기 및 증기 생산</p> <p>7.1.2 수돗물, 공업용수 또는 증기의 생산</p> <p>7.1.3 컨테이너 야드 또는 내륙 컨테이너 기지</p> <p>7.1.4 화물선용 하역 시설</p> <p>7.1.5 상업용 공항</p>	<p>유관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열병합(Cogeneration)인 경우</p> <p>2. 석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청정 석탄 기술만을 사용해야 한다.</p> <p>위원회가 승인한 최신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p>	<p>A1</p> <p>A2</p> <p>A4</p> <p>A4</p> <p>A3</p> <p>A3</p> <p>A3</p> <p>A2</p>
7.2 천연가스 충전소		B1
<p>7.3 대중교통 시스템 및 벌크 제품 운송</p> <p>7.3.1 철도 운송</p> <p>7.3.2 파이프라인 수송(송수관로 제외)</p> <p>7.3.3 해상 운송 서비스</p> <p>7.3.4 항공 운송 서비스</p>	<p>유관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조연도로부터 BOI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이 14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p>A2</p> <p>B1</p> <p>A2</p> <p>A3</p>
<p>7.4 물류 서비스 센터</p> <p>7.4.1 유통센터(DC : Distribution Centers)</p> <p>7.4.2 국제유통센터( IDC : International Distribution Centers)</p>	<p>1. 불입 등록자본은 1,0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p> <p>2. 최신 컴퓨터 시스템이 제어하는 제품 보관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p> <p>3. IDC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적으로 따라야 한다.</p> <p>3.1 최소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1억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p> <p>3.2 최소 5개국을 대상으로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p> <p>4. DC 프로젝트는 메리트 기반 특혜 대상이 아니다.</p>	<p>B1</p> <p>A3</p>

7.5 국제본부(IHQ: International Headquarters)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불입 등록자본은 1,0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li> <li>2. 외국에 있는 관계회사 또는 최소 1개국에 있는 외국 지사를 감독해야 한다.</li> <li>3. 다음과 같은 사업 계획 및 사업 범위를 보유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 조직 관리 및 경영·사업 계획</li> <li>3.2 제품 소싱</li> <li>3.3 R&amp;D</li> <li>3.4 기술 지원</li> <li>3.5 마케팅 및 판촉</li> <li>3.6 인적자원 및 교육훈련·개발</li> <li>3.7 비즈니스 자문 서비스. 예) 재무관리, 마케팅, 회계 시스템 등</li> <li>3.8 경제·투자 분석 및 연구</li> <li>3.9 신용 관리 및 통제</li> <li>3.10 금융 센터</li> <li>3.11 위원회 승인을 받은 기타 서비스</li> </ol> </li> <li>4. IHQ 프로젝트는 메리트 기반 혜택 대상이 아니다.</li> </ol>	B1 (R&D용 기계류 및 교육훈련 활동만 해당)
7.6 국제무역센터(ITC : International Trading Centers)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불입 등록자본은 1,0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li> <li>2. ITC 프로젝트는 메리트 기반 혜택 대상이 아니다.</li> </ol>	B1
7.7 무역 및 투자 지원 사무소(TISO : Trade and Investment Support Offices)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간 판매·관리 비용은 1,0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li> <li>2.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 계획 및 사업 범위를 보유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관계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및/또는 사무실 또는 공장 건물의 제공 또는 임대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li> <li>2.2 증권 및 외환 거래를 제외한 사업 운영 관련 자문 서비스. 회계, 법무, 광고, 건축 및 토목공사 사업의 경우, 투자촉진 혜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무부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또는 기타 유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li> <li>2.3 제품 소싱에 관한 정보 서비스</li> <li>2.4 건축 및 토목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엔지니어링 및 기술 서비스</li> </ol> </li> </ol>	B2

	<p>2.5 기계류, 엔진, 도구 및 장비와 관련된 사업 활동.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매를 위한 국내 수입</li> <li>(2) 교육훈련 서비스</li> <li>(3) 설치 및 유지 보수</li> <li>(4) 보정</li> </ul> <p>2.6 태국에서 제조된 제품의 도매</p> <p>2.7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예) 행정관리 서비스, 재무 및 회계 서비스, 인적자원 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 고객 서비스, 데이터 프로세싱 등</p> <p>3. TISO 프로젝트는 메리트 기반 혜택 대상이 아니다.</p>	
<p>7.8 에너지 서비스 회사(ESCO : Energy Service Company)</p>	<p>투자촉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A1</p>
<p>7.9 산업용 부동산 개발</p> <p>7.9.1 산업구역 또는 산업단지</p> <p>7.9.1.1 산업구역 또는 산업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콕 및 싸뭇쁘라깐(Samut Prakarn)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투자촉진 대상이 아니다.</li> <li>2. 프로젝트의 전체 토지면적은 500 rai 이상이어야 한다.</li> <li>3. 공장용지는 전체 면적의 60% 이상 75%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전체 면적이 1,000 rai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 공장용지 면적은 투자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li> <li>4. 기타 조건은 다음과 같이 위원회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li> </ul> <p>4.1 주요 도로 표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 면적이 1,000 rai 이상인 경우, 주요 도로는 전체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4차선 도로이어야 하고, 노면 폭은 최소 1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교통섬(traffic island) 및 양측 보도의 폭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갓길 및 노면은 긴급 정차를 하기에 충분한 너비여야 한다.</li> <li>(2) 전체 면적이 500 rai 이상 1,000 rai 미만인 경우, 주요 도로는 전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2차선 도로이어야 하고, 노면</li> </ul>	<p>B1</p>

	<p>폭은 7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교통섬(traffic island) 및 양측 보도의 폭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갓길 및 노면은 긴급 정차를 하기에 충분한 너비여야 한다.</p> <p>4.2 보조 도로는 노면 폭이 8.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양측 갓길의 폭이 최소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4.3 폐수 처리는 폐수의 특성에 적합해야 하고 법적 배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프로젝트는 폐수 종말처리장을 갖추어야 한다.</p> <p>4.4 폐수 배출 시스템은 빗물 배출 시스템과 완벽하게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p> <p>4.5 프로젝트는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른 쓰레기 수거 및 제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p> <p>4.6 산업구역에 위치한 공장은 천연자원 및 환경정책기획청(ONEP) 전문가심의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 산업 및 금지 산업 분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p> <p>4.7 산업구역은 충분한 공공 유틸리티, 전기, 수도, 전화 및 우체국을 갖춘 공장을 제공해야 한다.</p> <p>4.8 산업구역은 투자촉진 혜택 인증서의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체 토지면적의 약 25% 또는 위원회가 승인한 면적을 공공 유틸리티 서비스용으로 개발해야 한다.</p>	
7.9.1.2 보석 및 장신구 산업구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 면적은 100 rai 이상이어야 한다.</li> <li>2. 보석 또는 장신구와 관련된 운영 구역은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어야 한다.</li> <li>3. 프로젝트는 보석 및 장신구 판매 구역을 갖추어야 한다.</li> <li>4. 프로젝트는 적절한 보안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li> <li>5. 프로젝트는 회의실, 전시홀 및 비즈니스 센터를 갖추어야 한다.</li> </ol>	A3
7.9.1.3 물류파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 면적은 200 rai 이상이어야 하며, 프로젝트는 전체 면적이 5만 m<sup>2</sup> 이상인 임대용</li> </ol>	A3

	<p>또는 판매용 창고의 설립에 투자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항구, 공항, 세관 검문소 및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로부터 50 km 이내 또는 자유구역(Free Zone)에 위치해야 한다.</li> <li>3. 프로젝트는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을 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li> <li>4. 프로젝트는 컨테이너를 하역하기 위한 스테이션(station) 또는 트럭 터미널 및 최소 50개의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지를 갖추어야 한다.</li> <li>5.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허브를 연결하는 고속 통신을 제공하는 주요 통신 인프라를 설치해야 한다.</li> <li>6. 태국인은 전체 등록자본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li> <li>7. 프로젝트는 유관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li> </ol>	
7.9.14 영화 제작을 위한 산업구역(무비 타운)	<p>다음과 같은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내 및 야외 스튜디오</li> <li>2. 제작 후 서비스. 예) 필름 현상 및 복제, 특수효과, 컴퓨터 애니메이션, 사운드 랩</li> </ol>	A3
7.9.15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단지 또는 산업구역	투자촉진 혜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3
7.9.2 산업구역 또는 기술산업구역		
7.9.2.1 과학기술파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큐베이션 센터를 갖추어야 한다.</li> <li>2. 국내외 통신을 위한 최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li> <li>3. 지속적인 전력공급 백업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li> <li>4.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른 여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li> </ol>	A1
7.9.2.2 소프트웨어 파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프로젝트는 전체 구역을 연결하는 고속 광섬유 통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li> <li>2. 주요 통신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파크로부터 국내외 통신 센터로 연결되는 고속 케이블을 갖추어야 한다.</li> </ol>	A1

<p>7.9.2.3 데이터 센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지속적인 전력공급 백업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li> <li>4. 전체 면적은 5,000 m<sup>2</sup> 이상이어야 한다.</li> <li>1. 프로젝트 구역에 위치한 고객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 서버 코로케이션 (server co-location), 매니지드 서비스, 고객 서버의 백업 서비스, 데이터 복구 서비스 (DRS), 데이터센터, 전문가자문 등</li> <li>2. 데이터 센터의 면적은 3,000m<sup>2</sup> 이상 이어야 한다.</li> <li>3. 최소 4개의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센터와 국내외 통신 센터를 연결하는 고속 통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 통신 시스템은 최소 3개의 시스템에 대하여 속도가 각각 최소 10 Gbps이어야 하며, 전체 시스템의 총 속도는 최소 60 Gbps이어야 한다.</li> <li>4. 시스템 유지 보수 또는 장비 교체 시에도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Concurrently Maintainable).</li> <li>5. 데이터 센터의 전체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Continuous Rating" 발전기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발전기 중 1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백업 발전기를 갖추어야 한다.</li> <li>6. UPS, IT Cooling 및 UPS Cooling을 위한 장비 또는 백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시스템 및 장비는 주요 시스템의 기능 고장 발생 직후 즉각적으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주요 시스템의 고장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li> <li>7. 배전 시스템은 독립적인 배전 경로를 갖추어야 한다.</li> <li>8. 장비의 손상 또는 오작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고장 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li> <li>9. 고효율 공조 시스템과 백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li> <li>10. 전체 구역에 대한 소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li> </ol>	<p>A1</p>
-----------------------	--	-----------



	<p>11. 24시간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p> <p>12. ISO/IEC 27001(데이터 센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p>	
7.10 클라우드 서비스	<p>1. 태국 내에서 ISO/IEC 27001(데이터 센터) 인증을 받은 최소 2곳의 데이터 센터에 위치해야 한다.</p> <p>2. 모든 관련 데이터 센터가 연결되어야 하고, 각각의 연결 속도는 최소 10 Gbps이어야 하며, 동일한 속도의 백업 연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p> <p>3. ISO/IEC 27001(클라우드 보안) 및 ISO/IEC 20000-1(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p>	A1
7.11 연구개발	<p>1. 다음과 같은 사업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p> <p>1.1 기초연구란 학술적 가치를 가진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를 의미한다. 이 지식은 제품생산과 제조 과정 또는 향후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p> <p>1.2 응용연구란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 해결 또는 컨셉 개발 과정에 기초 지식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응용연구에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제조법 개발, 제품 설계, 생산공정 설계 등이 포함된다.</p> <p>1.3 파일럿 개발이란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바탕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파일럿 개발은 산업적 환경의 생산공정에서 제품 설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장 테스트 및/또는 적합한 조건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거나 준산업적 차원에서 생산공정을 테스트하는 활동이다.</p> <p>1.4 실증 개발이란 산업적 환경에서 생산공정을 테스트하기 위해 파일럿 개발의 결과를 더욱 발전시키는 연구 및 개발 활동을 말한다. 그러한 테스트는 기술 및 생산공정을 검증하고 품질 관리 및 비용 산정이라는 맥락에서 해당 공정의 무결성 수준 및 상업적 규모의 생산 능력을 실증하기 위해 실시된다.</p>	A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연구개발의 세부 사항과 범위 및 연구자 정보 (예: 연구자 수, 연구·업무 경력 등)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li> <li>3. 투자촉진을 받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의해 발생하거나 투자촉진을 받은 기업 또는 하도급업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수행한 다운스트림 생산에 의해 발생한 수입은 해당 투자촉진 사업의 수입으로 간주된다.</li> <li>4. 투자촉진을 받았거나 위원회에서 승인한 과학기술파크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 만료 후 5년간 법인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li> <li>5. 연구개발 직원의 연봉으로 최소 150만 바트를 지출해야 한다.</li> </ol>	
<p>7.12 바이오기술</p> <p>7.12.1 R&amp;D 활동 및/또는 종자산업의 개발, 바이오기술을 사용한 식물, 동물 또는 미생물의 개량</p> <p>7.12.2 R&amp;D 활동 및/또는 바이오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의약품의 제조</p> <p>7.12.3 R&amp;D 및/또는 건강, 농업, 식품 및 환경용 진단 키트의 제조</p> <p>7.12.4 R&amp;D 및/또는 미생물, 식물 세포 및 동물 세포를 사용한 바이오 분자 및 생리활성물질 제조</p> <p>7.12.5 분자생물학 연구 및 개발, 실험, 테스트 또는 품질관리 서비스를 위한 원재료 및 /또는 필수재료의 제조 및/또는 생물학적 물질의 생산</p> <p>7.12.6 생물학적 물질 분석 및/또는 합성 서비스 및/또는 품질관리 서비스 및/또는 제품 유효성 검증 서비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프로젝트는 국가과학기술개발청(NSTDA) 또는 태국 생명과학우수센터(TCELS)가 승인한 최신 바이오기술을 사용해야 한다.</li> <li>2. 투자촉진을 받았거나 위원회에서 인정한 과학기술파크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 만료 후 5년간 법인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li> </ol>	<p>A1</p> <p>A1</p> <p>A1</p> <p>A1</p> <p>A1</p> <p>A1</p>
<p>7.13 엔지니어링 설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촉진을 받았거나 위원회에서 승인한 과학기술파크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 만료 후 5년간 법인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이 추가로 부여된다.</li> <li>2. 엔지니어링 직원의 연봉으로 최소 150만 바트를 지출해야 한다.</li> </ol>	<p>A1</p>

7.14 과학 실험실	투자촉진을 받았거나 위원회에서 승인한 과학기술파크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 만료 후 5년간 법인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이 추가로 부여된다.	A1
7.15 보정 서비스	투자촉진을 받았거나 위원회에서 승인한 과학기술파크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 만료 후 5년간 법인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이 추가로 부여된다.	A1
7.16 제품 멸균 서비스		A2
7.17 불필요 물질의 재활용 및 재사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관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li> <li>2. 산업단지 또는 투자촉진 대상 산업구역에 위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가 예외 조치를 취할 수 있다.</li> <li>3.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불필요 물질은 태국 국내에서만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li> <li>4.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불필요 물질을 분리 또는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li> <li>5. 투자촉진을 받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범주에 따라 권리 및 특혜가 부여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분리</li> <li>- 추가적 재활용 공정 또는 가치 있는 물질의 회수 공정을 수반하는 분류/분리</li> </ul> </li> </ol>	A3 A2
7.18 폐기물 처리 또는 폐기	프로젝트는 유관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2
7.19 직업훈련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디자인(설계)을 포함한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li> <li>2.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li> <li>3. 투자촉진을 받았거나 위원회에서 승인한 과학기술파크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 만료 후 5년간 법인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이 추가로 부여된다.</li> </ol>	A1
7.20 태국 영화의 제작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태국 영화의 제작에는 영화, 다큐멘터리 또는 TV 프로그램의 제작이 포함되나, 광고의 제작은 포함되지 않는다.</li> <li>2. 세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수입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CD, VCD, DVD 등의 기타 형식으로 만들어진</li> </ul> </li> </ol>	A3

	<p>영화의 판매를 포함하여 저작권 판매로 거둔 수입</p> <p>2.2 극장 및 영화 배급사와의 수입 분배 계획에 따라 거둔 수입</p>	
7.21 영화 지원 서비스	<p>영화 지원 서비스는 영화,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및 광고가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사업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화 제작 장비 및/또는 소도구 대여 서비스는 카메라, 그립 장비, 조명 세트 등의 주요 장비/기계류를 갖추어야 한다.</li> <li>2. 필름 현상 및 복제 서비스는 필름 현상기, 필름 복제기, 디지털 필름 복제기 등의 주요 장비/기계류를 갖추어야 한다.</li> <li>3. 녹음 서비스는 디지털 녹음기, 디지털 사운드 편집기, 디지털 사운드 믹싱 장비 등의 주요 장비/기계류를 갖추어야 한다.</li> <li>4. 전문 영상 서비스는 카메라만으로 불가능한 특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표준해상도/고해상도 디지털 녹화기, 편집실, 디지털 영상 합성 장비, 특수 효과 장비 등의 주요 장비/기계류를 갖추어야 한다.</li> <li>5. 태국 내 외국 영화 제작을 위한 코디네이션 서비스에는 허가증 발급을 위한 유관 정부 기관과의 조율, 촬영 로케이션 섭외, 스태프 모집 및 영화 장비의 조달과 같은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li> <li>6.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표준 시설을 갖춘 스튜디오 대여 서비스</li> </ol>	A3
7.22 관광 촉진 서비스		
7.22.1 페리 서비스, 투어 보트 서비스 또는 투어 보트 대여	유관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1
7.22.1 투어 보트 포트(port) 서비스	보트 리프팅 장비, 육상 보트 데크, 유지 보수를 위한 보트 보관소 등의 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B1
7.22.3 놀이공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5억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li> <li>2. 프로젝트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li> </ol>	A3

<p>7.22.4 문화센터 또는 예술공예센터</p> <p>7.22.5 개방형 동물원</p> <p>7.22.6 아쿠아리움</p> <p>7.22.7 경주장</p> <p>7.22.8 케이블카</p>	<p>한다.</p> <p>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3,0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p> <p>1.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5억 바트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면적은 500 rai 이상이어야 한다.</p> <p>2. 프로젝트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3. 전체 면적의 15%는 녹지대로 할당하고 또 다른 15%는 주차장으로 할당해야 한다.</p> <p>1.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1억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p> <p>2. 투자촉진 혜택 인증서의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1. 프로젝트는 유관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2. 프로젝트는 국제자동차연맹(FIA) 또는 국제모터사이클연맹(FIM)의 표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p> <p>3. 프로젝트는 환경 피해 또는 인근 지역에 대한 위험을 예방 및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보유해야 한다.</p> <p>4. 투자촉진 혜택 인증서의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프로젝트는 유관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A3</p> <p>A3</p> <p>A3</p> <p>A3</p> <p>A3</p>
<p>7.23 관광 지원 활동</p> <p>7.23.1 호텔</p>	<p>1. 각각의 호텔은 최소 100개의 객실을 갖추거나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5억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p> <p>2. 투자촉진 대상 호텔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권리 및 혜택을 부여받는다.</p> <p>- 20개 특별 투자촉진구역 중 1곳에 위치한</p>	<p>A4</p>

	<p>투자촉진 대상 호텔</p> <p>- 기타 지역에 위치한 호텔은 메리트 기반 인센티브 대상이 아니다.</p>	B2
7.23.2 컨벤션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 면적은 4,000m<sup>2</sup>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홀의 면적은 3,000m<sup>2</sup> 이상이어야 한다.</li> <li>2.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li> <li>3. 프로젝트의 청사진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li> </ol>	A3
7.23.3 국제전시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내 전시공간은 25,000m<sup>2</sup> 이상이어야 함.</li> <li>2. 모든 홀은 비즈니스 회의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li> </ol>	A3
7.23.4 건강재활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료기술을 사용해야 한다.</li> <li>2. 야간 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li> <li>3. 프로젝트는 메리트 기반 인센티브 대상이 아니다.</li> </ol>	B1

참고 : 1 rai는 약 1,618m<sup>2</sup>(489.6평) 정도임.